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79
------	------

2017. 8. 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8.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삭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통해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지원 타당성 심의를 거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올해 7월말을 기준으로 186억 7천 3백만원을 재정투융자기금과 시금고에 예탁·예치하고 있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연도말 조성액(A)	‘17년도 증감액			‘17년도 7월말 조성액 및 관리현황 A + B		
	계(B)	수입액 (C)	지출액 (D)			
19,171	△495	190	688	계	재투기금 예탁	시금고 예치
				18,673	12,495	6,178

- 지난 2010년 5월 시행된 5.24 대북 조치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대북 교류지원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과거와 같이 활발한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이후 최근에는 연간 약 6억원 내외의 예산을 통해서 도시계획분야 기초연구용역과 같은 학술회의와 민간단체 지원 중심의 제한적인 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다. 기금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 정부는 기금 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 제한 등을 목적으로 지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초과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2012년 12월 남북교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를 위한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8년째 활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으로 제시한 서울시와 북한 지역과의 교류협력 증진 기반조성과 관련사업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각종 학술대회 지원이나 용역수행, 행사성 경비 지출 등은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충분히 수행가능해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제시되고 있음.
-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판단한다면 남북관계나 북측과의 협의, 정부의 승인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사업의 성사 여부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자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반면, 남북교류사업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고려, 인도적인 지원 필요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 지

속적인 사업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에 비추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함.

- 결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여부는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수입액의 전부를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경우에도 기금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해야 하며, 또한, 기금의 존속이 결정될 경우에도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 강화와 자금운용 합리화,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 ----- <u>2022년 12월 31일</u>----- . ----- 존속기한----- ----- ----- ----- .</p>